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조성대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3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시 상주하며 회계업무, 장비 관리,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간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주하며 업무에 임하는 간사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자 근무수당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덧붙임

나. 자율방재단 현황 및 타 시 • 군 현황 : 덧붙임

다. 입법예고 결과('23, 7, 5, ~ 7, 11,)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마을 환경정비, 겨울철 제설작업, 해충 방역 및 수해 대비 활동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 장비 관리 등 행정 업무 를 수행할 최소 인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보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내 9개 시 · 군에서 기 근무수당을 보장하고 있는 등,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23년 7월 12일

도시교통전문위원 윤선기

붙임1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붙임2

자율방재단 현황 및 타 시·군 간사 현황

1. 자율방재단 현황

단체명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설립목적	재난 예방・복구 활동을 통한 방재기능강화 및 시민의 자율적 참여로 방재의식 고취					
지원근거 및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2008. 2. 14. 설립 ○ 2009. 2. 14. 발대식					
인력현황	○ 지역자율방재단장 : 권영수 ○ 단원수 : 250명					
기구표	 ○ 단장 : 1인 ○ 부단장 : 2인 ○ 본부간사 : 1인 ○ 지역대표 : 14인 					
2023 예산현황	○ 예산총액 : 81,025천원(보조금 100%) - 활동운영비 : 51,025천원(시비100%) / 역량강화비 30,000천원(도비50%, 시비50%) ※재원구성(100%) : 보조금(100%)					
2022년 주요활동 실 적	 코로나19 관련 활동 및 방역 작업(105회, 424명) 마을 환경정비(24회, 170명) 겨울철 제설작업(15회, 48명) 수해 대비 취약지역 등 예찰 및 정비 활동(13회, 43명) 해충 방역작업(23회, 99명) 제설용 모래주머니 제작(6회, 58명) 					
2023년 주요사업 계 획	·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 - 배수로 및 하천 정비 - 예방 캠페인(산불예방 등) - 수해·설해 피해 복구작업 - 전염병 예방 방역 작업 · 재난 관련 교육·훈련 실시 - 도로 등 제설작업					

2. 타 시 • 군 현황

순	시군	지원방식	간사 수당 지원액(천원)		지원 근거
번	, –	, _ ,	예산(년)	급여(월)	
1	남양주시	_	-	_	-
2	수원시	-	-	-	-
3	성남시	보조금 지원	27,975	2,330	조례(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비용)
4	의정부시	-	-	-	-
5	안양시	-	-	_	-
6	부천시	-	-	_	-
7	광명시	_	-	_	-
8	평택시	보조금 지원	26,800	2,230	조례(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비용)
9	동두천시	-	-	_	-
10	안산시	보조금 지원	21,000	1,719	조례(간사 근무수당의 지원)
11	고양시	_	-	_	-
12	과천시	_	-	_	-
13	구리시	_	-	_	-
14	오산시	_	-	_	-
15	군포시	_	-	_	-
16	의왕시	보조금지원	8,400	700	조례(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비용)
17	하남시	-	-	-	-
18	용인시	보조금 지원	19,087	1,590	조례(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9	파주시	_	-	_	-
20	시흥시	_	-	_	-
21	이천시	-	-	_	-
22	안성시	보조금 지원	25,100	2,090	조례(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비용)
23	여주시	-	-	_	-
24	김포시	보조금 지원	22,000	1,776	조례(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비용)
25	화성시	보조금 지원	26,400	2,200	조례(간사 근무수당의 지원)
26	광주시	_	-	_	-
27	양주시	-	_	_	-
28	포천시	-	_	_	-
29	연천군	-	_	-	-
30	가평군	-		_	-
31	양평군	보조금 지원	13,800	1,150	조례(시장이 인정하는 기타 비용)